

#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2023. 9. 1.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대출실적)**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1. 충청북도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제3조(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1. 혁신기업
2. 녹색기업
3. 추천기업
4.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5.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6. 전입기업
7. 소재·부품 전문기업
8.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9. 명절·재해자금 등
10. 기타 지원기업
11.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의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실적 중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수혜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금리 감면이 없는 대출은 대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지원대상업체 중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1.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천기업
2.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3.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4.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전입기업
5.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6.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② 충북본부장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40% 이상에서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전략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④ 전략지원한도는 업체당 2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

⑤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2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 소진으로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 실적에 대해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배정하며 신용등급 제한은 제6조 제6항을 따른다. 다만 업체당 배정한도는 제4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라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

**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충북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 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충북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충북본부장은 제2항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 이내에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④ 특별지원한도는 업체당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

⑤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

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4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⑧ 제7항에 따라 총복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

**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의 전략지원부문 또는 제6조 제1항의 특별지원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

③ 일반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비례배정한다.

④ 일반지원한도는 업체당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

⑤ 일반지원한도의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6조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⑦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총복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시설자금 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 1년 이내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총복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 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④ 총북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 지원기업)** 총북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9호(명절·재해자금 등) 및 제10호(기타 지원기업)에서 정한 지원대상업체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배정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총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 대출은 예외)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총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0일까지 한국은행 총북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총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은행 총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은행 총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한국은행 총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총북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금융기관은 총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총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회수 및 배정)** 총북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총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총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집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3조(제재)** ① 충북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자료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즉시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도 감축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4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우선지원부문 해당업체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 취급분도 이 기준에 의해 한도를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5년 6월 우선한도배정 신청시에 한하여 우선한도배정신청서상 “전월말 실적”은 각 금융기관이 2005년 5월 한도로 기 신청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월중 변동내역”은 2005년 5월 우선한도 신청 이후 당해월에 신규취급한 대출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5년 10월 1일 한도배정시(금융기관대출실적은 2005.8월말 기준)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1.>

이 기준은 2007년 1월 한도배정시(금융기관대출실적은 2006.11월말 기준)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선한도 대상은 만기까지 우선지원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부 칙 <2007. 7.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도배정은 2007년 10월 한도 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2008년 9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2010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1. 10. 14.>

이 기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2012년 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4. 30>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배정된 충북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3. 7. 24.>

이 기준은 2013년 10월 중소기업 지원자금 한도배정시(금융기관의 2013년 8월중 취급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4. 12. 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대출은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15. 4.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6. 29.>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이 기준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8.>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20.>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3.>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충북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1.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8.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3.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6.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기준 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전산 코드	지원 부문	선 정 기 준 <sup>1),2)</sup>
A3	혁신기업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부로부터 성능인증서를 받은 기업 ② 기술보증기금이 선정한 "Kibo A+멤버스" 기업 ③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혁신리딩기업" ④ 국제적으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규격 등을 인증 받은 기업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s.) 등 인증 또는 마크 획득 기업 ⑤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참여기업 ⑥ 보유 또는 사용중인 기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기업
A4	녹색기업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기업 ④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증한 "GR(Good Recycled Product, 우수재활용 제품 품질인증)" 마크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선정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 ⑥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자재 생산 기업 ⑦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Biz" 기업
A6	추천기업	①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②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③ 충북지역 소재 상공회의소가 선정한 IP기반 해외진출지원 대상 기업 및 충북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및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⑤ 고용창출 우수기업 -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고용우수기업" - 대출취급월 현재 직전 1년간(대출취급월-12개월부터 대출취급월-1개월까지) 기간평균 상용근로자 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전년동기대비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전산 코드	지원 부문	선 정 기 준 <sup>1),2)</sup>
A7	지역 특화산업 영위기업	① (재)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충청북도 대표산업 영위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품질경영우수기업" ③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인증한 경제자유구역 입주 중소기업
A8	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	-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기업
A9	전입기업	- 타 지역으로부터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별표1-1> 업종 영위 기업
A11	소재·부품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
A13	농림 수산업 관련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 내지 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 법인 포함)
A14	명절·재해 자금 등	① 설, 추석 등 자금성수기에 충북본부장이 특별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② 수재, 화재 등의 재해 및 노사분규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북본부장이 특별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A15	기타 지원기업	- 충북지역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 또는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금융지원상담창구 등을 통해 자금애로를 호소하는 기업 중 충북본부장이 자금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기업
A16	경기부진·경기민감 업종 영위 기업	- 다음의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충청북도 소재 기업 1) 음식·숙박업 : 55~56(단, 주점업(5621)은 제외) 2) 도소매업 : 45~47 3) 여행업 : 752 4) 운수업 : 49, 51~52 5) 여가업 : 90~91(단,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은 제외) 6) 조선업 : 311 7) 해운업 : 501~502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선정일(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간주

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

<별표1-1>

### 전입기업(A9) 업종기준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 제10차)	업 종
농림어업	A01~A03	업종제한 없음
제조업	C10~C34	업종제한 없음
건설업	F41~F42	업종제한 없음
운수 및 창고업	H49~H52	H49211(도시철도 운송업)과 H4923(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을 제외한 업종
정보통신업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0221	프로그램 공급업
	J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관광 관련업	I551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단, 해당 업종 영위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야 함)
	I561	음식점업 (단, 해당 업종 영위가 지역 관광협회에 등록되어야 함)
	M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단, 해당 업종 영위가 지역 관광협회에 등록되어야 함)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단, 해당 업종 영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야 함)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400	시장조사업(여론조사업 제외)
	M71531	경영컨설팅업
	M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N75994	포장 및 충전업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별표2>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전문서비스업	71101 변호사업
	71102 변리사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1202 세무사업
보건업	861 병원
	862 의원
무도장	91291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 미용업
	96113 피부 미용업
	96119 기타 미용업
안마업	96122 마사지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별표3>

###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sup>1)</sup>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sup>2)</sup>
최종부도업체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주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 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별지 제1호 서식>

##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      년      월      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 I. 신청내용

대출취급액	백만원	대출기간	~
금리	%	대출계좌번호	
	(감면금리) %	자금종류	<input type="checkbox"/> 운전자금 <input type="checkbox"/> 시설자금
채권보전형태	<input type="checkbox"/> 순수신용 <input type="checkbox"/> 담보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대환
	<input type="checkbox"/> 보증기관 보증 <input type="checkbox"/> 혼합		<input type="checkbox"/> 만기연장 <input type="checkbox"/> 지원연장
지원부문	△△△△	전략지원부문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전산코드 :            )		
취급점 및 담당자	○○지점, ○○○○ (TEL:                    , FAX:                    )	특별지원부문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II.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확인	(인)
주소	(TEL:                    , FAX:                    )		
자금담당자		E-mail	
업종명 (KSIC 5자리 코드)	△△△△ (□□□□□)	신용등급 (은행 자체등급)	
자금용도		설립일	
주 생산품		사업자등록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법인등록번호	
매출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총 자산	백만원	(납입자본금)	(                    백만원)

### III. 첨부서류

1. 대출금원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1부
4. 기타 한국은행이 요청한 서류. 끝.



##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      년      월중)

한국은행 충북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

신청정보				업체현황										대출내역									
일련 번호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sup>1)</sup>	신청 사유 <sup>2)</sup>	지원 부문 <sup>3)</sup>	지원부문 여부 <sup>4)</sup>	신용 등급 <sup>5)</sup>	업종 <sup>6)</sup>	업체 소재지 <sup>7)</sup>	업체명	사업자 구분 <sup>8)</sup>	법인 등록번호 <sup>9)</sup>	사업자 등록번호 <sup>10)</sup>	대표자 성명	자금 구분 <sup>11)</sup>	취급 점포명	취급점 소재지 <sup>7)</sup>	대출일 <sup>12)</sup>	만기일 <sup>13)</sup>	대출 기간	대출 금액	금리 <sup>14)</sup>	채권 보전 <sup>15)</sup>	

- 주 : 1) 개별 대출건에 대한 고유 계좌번호. 업체당 신규취급실적 건별로 기재(업체당 신규취급실적이 한 건 이상인 경우 건별로 각행관리번호 부여)  
 2) "신규", "대환", "만기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대환" 또는 "만기연장"으로 기재한 경우 취급실적 변동보고서에 기존 취급분의 변동사유를 "만기상환"으로 하여 반드시 보고)  
 3) 지원부문별 코드는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별표 1>을 참조하여 기재  
 4) 일반지원부문 해당시 "0", 전략지원부문 해당시 "1",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2", 특별지원부문 해당시 "3",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4"로 기재  
 5)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기재.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에 별도의 신용등급을 부여할 경우 "SOHO"라고 기재  
 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최종개정분) 5자리 숫자 기재  
 7) 광역시 지역은 시 단위, 그 외 지역은 시군 단위로 기재(예 : 충북청주, 대전)  
 8) "개인", "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  
 9) "-" 생략, 법인사업자만 법인등록번호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10) "-" 생략  
 11) "시설", "운전"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신청사유가 "대환"인 경우 대환일, "만기연장"인 경우 실제 기한연장일을 기재  
 13) 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인 경우 대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을 기재  
 14) 대출취급시 적용금리를 기재. 이차보전이 있을 경우 해당 이차보전을 포함한 금리를 기재  
 15) "순수신용"(개인 및 법인에 의한 보증 포함), "담보", "보증"(신용보증기관 및 정부 보증), "혼합"으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      년      월중)

한국은행 충북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

변동전보고내역							변동보고내역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sup>1)</sup>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자금 구분	취급 점포명	변동전 잔액	변동 일련번호 <sup>2)</sup>	변동 사유 <sup>3)</sup>	변동사유 발생일 <sup>4)</sup>	변동 처리일 <sup>5)</sup>	변동 금액	변동후 잔액	비고

주: 1) 기존 취급건의 각행관리번호를 기재

2) 개별 대출건에 대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 변동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 "만기상환"("대환" 또는 "만기연장" 건도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으로 처리), "중도전액상환", "중도일부상환", "지원종료", "폐업", "최종부도",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 기재

4) 만기일자, 상환일자, 폐업일, 최종부도일 등 실제 변동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단, 한국은행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월의 말일로 기재)

5) 보고 대상월의 처리일자를 기재(예: 3월중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는 3월중 일자만 기재)